

건축과

주요 사업

1. 참 살기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
2.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
3.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사업
4. 공동주택 건설공급 계획
5. 도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

신규 사업

1. 참 살기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(교리지구)
2. 공동주택 옥상 녹화사업
3. 건축물 등기촉탁 업무대행

주요사업

1 참 살기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

- ◇ 노후·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도로,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
- ◇ 인구유입을 바탕으로 소득증가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사업개요(관련부서 : 농림수산식품부)

- 위 치 : 2개 마을(선산읍 이문리, 장천면 상장리)
- 사업기간 : 2011 ~ 2014년(4년간)
- 사업비 : 174억원(국비 122, 도비 16, 시비 36)
- 사업내용 : 도로개설, 쉼터조성, 경로당 및 행복마당조성 등

□ 추진실적

- 행복마을사업 확정 : '10. 8월
- 실시설계용역 시행 : '10. 11월
-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 : '11. 11월
-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: '12. 4월
- 토지 및 지장물 보상 : '12. 5월
- 공사착공 : '12. 7월

□ 향후 추진계획

- 공사준공 : '14. 12월
- 예산확보계획(국비 70%, 도비 9%, 시비 21%) (단위 : 백만원)

구분	계	기 투자	2013년	2014년 이후	비고
계	17,400	9,745	4,785	2,870	
국비	12,180	6,821	3,349	2,010	광특
도비	1,566	877	431	258	
시비	3,654	2,047	1,005	602	

②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

◇ 농어촌지역의 노후·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

◇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 철거 및 정비

□ 주택개량사업

- 대상지역
 - 읍·면지역 : 도시계획상 상업·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 - 동 지역 :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- 사업량 : 40동
- 용자대상자
 - 농어촌지역에서 노후·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(무주택자 포함)
 -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추천한 자
- 지원조건 : 동당 50백만원 용자(이율 3%)
- 대출기간 :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

□ 빈집정비사업

- 사업량 : 30동 24백만원
- 지원조건 : 동당 800천원(시비 100%)
- 사업내용 :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정비
- 지원범위 : 빈집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를 지방비로 확보하여 지원

③ 공동주택 시설관리지원사업

- ◇ 공동시설물의 쾌적한 유지관리로 살맛나는 행복한 삶터 제공
 - ◇ 공동주택 시설관리 비용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
-

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20세대이상 아파트(준공 후 5년 이상 경과)
- 소요예산 : 300백만원
- 사업내용 : 단지내 주 도로, 가로등, 어린이놀이터, 경로당, 체육시설, 상·하수도, 수목전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자전거 보관대 설치, 옹벽 담장 녹화시설 설치비용 70% 지원

□ 추진계획

-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: '13. 1/4분기
- 현장실사 및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: '13. 2/4분기
- 지원단지 확정 및 사업착수 : "
-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: '13. 3/4분기
- 보조금 정산 : '13. 4/4분기

□ 기대효과

-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행복한 주거공간 조성
- 노후·불량한 시설물 정비로 입주민 안전 및 편의도모

4] 공동주택 건설공급 계획

- ◇ 정주환경이 좋은 도시를 위한 주택건설공급으로 주거안정 도모
- ◇ 자연친화적 쾌적한 환경속의 살기 좋고 편리한 주거문화 정착

□ 주택보급률

(2011. 12월기준)

공급대상 가 구	주 택 수(%)					주 택 보급률 (%)
	계	단 독	아파트	연 립	다세대	
150,757	166,374	70,752 (42.53)	86,712 (52.12)	3,949 (2.37)	4,961 (2.98)	110.35

□ 주택공급계획

- 분양주택 : 8개 단지 5,526세대

위 치	아파트명	세대수
옥계동 922	옥계 우미린 2차아파트	720
구평동 941	구평 영무예다음 2차아파트	550
봉곡동 산7-10 일원	봉곡 e-편한세상아파트	1,254
임은동 316-36 일원	임은 삼도 뷰엔빌 W아파트	997
옥계동 919	중흥 S-클래스	1,237
고아 원호 14 일원	세영리첼아파트	596
고아 문성 1324-1	대상종합개발	123
고아 문성 1192	반석주택	49

□ 주택건설 추진방향

- 친환경 인증 아파트 단지 건축
- 신재생 에너지 시설 및 친환경 자재 사용 등
- 자연친화적 주거공간 공급으로 건강한 주거문화 정착

□ 기대효과

- 시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행복한 주거문화 창조

⑤ 도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

- ◇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추천·지원
- ◇ 사회취약계층 소유의 노후주택 개·보수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(대출) 추천

- 대 상 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상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 무주택 세대주(서민, 근로자)
- 대출한도 : 전세보증금의 70%이내 최고 28백만원 이하
※ 3자녀이상 세대는 35백만원 이하
- 대출취급은행 : 우리은행, 농협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중소기업은행
- 지원기준
 - 주거용 건물 60㎡이하 원칙
 - 대출 연이율 2%(연체시 연3%)
 - 15년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

□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·보수 사업

- 대 상 :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으로서 개·보수 필요한 주택
- 사 업 비 : 호당 6백만원[국비80% 지방비20%(도 30 시 70)]
- 내 용 : 지붕개량, 주방개량, 화장실 수리 등
- 사업시행 : LH(한국토지주택)공사
- 사업일정 : 연도별 개·보수 추진
 - 대상 주택 선정 : '13. 3월
 - 실태 조사(LH공사) : '13. 4월
 - 공사 발주 착수·준공(LH공사) : '13. 6월

□ 기대효과

저소득가구의 안정된 경제활동 기반마련과 주거수준 향상

신 규 사 업

1 참 살기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(교리지구)

- ◇ 노후·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도로,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주거환경 개선
- ◇ 인구유입을 바탕으로 소득증가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사업개요(관련부처 : 농림수산식품부)

- 위 치 : 선산읍 교리 일원
- 사업내용 : 도로개설, 공원조성, 주차장 및 상하수도시설 설치, 경로당 건립
- 사 업 비 : 88억원(국비 62, 도비 8, 시비 18)
 - ※ 국비 70%, 도비 9%, 시비 21%
- 사업기간 : 2013 ~ 2016년(4년간)

□ 추진상황 및 계획

- 포괄보조사업 신청 : '13. 3월
- 사업지구 선정 : '13. 8월
- 실시설계용역 : '14. 2월
- 토지 및 지장물 보상 : '14. 11월
- 공사착공 : '15. 2월
- 공사준공 : '16. 12월

□ 기대효과

- 기본적인 생활환경보장 및 지역경기 부양
-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
-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도시미관 정비

② 공동주택 옥상 녹화사업

- ◇ 아파트 옥상을 활용한 텃밭가꾸기, 수목정원만들기 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화합과 공동체 활성화 분위기 확산
 - ◇ 공동주택 옥상녹화로 건물 냉난방 에너지절약
-

□ 사업개요

- 대 상 : 20세대 이상 준공된 아파트
- 사업기간 : 2013. 1 ~ 12월
- 사 업 비 : 5억원(시비 80%, 자부담 20%)
- 사업내용
 - 옥상 녹화사업이 가능한 기존 아파트 옥상에 텃밭가꾸기, 옥상 수목정원 등 설치비용 지원

□ 추진계획

- 사업홍보 및 신청접수 : '13. 2월
 - 현장실사 및 타당성 조사 : '13. 3월
 - 사업자 선정 심사(건축위원회 심의) : '13. 3월
 - 사업자 확정 및 공사착공 : '13. 4월
 - 사업완료 : '13. 10월
- ※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매년시행 여부 판단

□ 기대효과

- 옥상 녹화사업으로 입주민간 주민화합의 장 마련
- 자연친화적 건축물 이미지 제고

③ 건축물 등기촉탁 업무대행

- ◇ 건축물의 증축, 용도변경 등으로 건물대장의 변경이 있는 경우
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등기촉탁 업무를 대행
 - ◇ 민원인의 시간적·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해소
-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3년 이후 계속사업
- 대 상 : 건축물의 면적, 용도, 구조 등이 변경된 경우
- 사업내용 :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나 표시변경 신청 시 신청 업무
처리와 함께 등기 촉탁

□ 추진계획

- 등기촉탁업무 대행 홍보 : 연중
 -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전달 교육
- ※ 구비서류
 - 등록세 영수필확인서(3,600원)
 - 대법원 등기수입증지(3,000원)

□ 기대효과

- 민원인의 시간적·경제적 불편함을 최소화
- 향상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제고